

# 2012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12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1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규모는 총 5개 기금 7,2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4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금명	2011년도말 현재액 <sup>㉠</sup>	2012년 운용계획		2012년도말 현재액 <sup>㉡</sup> (d)=(a)+(b)-(c)	증감 <sup>㉢</sup> (e)=(d)-(a)
		수입 <sup>㉣</sup> (b)	지출 <sup>㉤</sup> (c)		
합계(5건)	12,348,873 (6,878,279)	2,072,196 (1,288,949)	905,311 (905,311)	13,515,758 (7,261,917)	1,166,885 (383,638)
통합관리기금	5,614,571	974,263	144,521	6,444,313	829,742
사회복지기금	4,009,074	233,414	103,370	4,139,118	130,044
체육진흥기금	1,546,636	537,111	0	2,083,747	537,111
식품진흥기금	114,216	51,590	57,420	108,386	△5,830
재난관리기금	1,064,376	275,818	600,000	740,194	△324,182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용자금은 지출 ㉤에 포함하여 계상함.

※ 합계란의 ( )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(내부거래)을 제외한 순계 규모임.

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7조 (예산의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